

전기공학과 학생회 회칙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명칭) 본회는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생회(이하 본회)라 한다.

제 2조 (목적) 본회는 학생회원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통하여 전체 학생회원의 단결과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본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학사과정에 학적을 두고 수료 또는 졸업을 하지 않은 자로 한다.

제 4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1.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
2.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.
3.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.
4. 본회의 회원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.
5. 휴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.

① 선거권

②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

6. 5항에도 불구하고,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5항 각 호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는다.

제 5조 (구성) 본회는 전기공학과 전체 재학생을 회원으로 하고 학생회를 조직 기반으로 하며 학생총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.

제 2장 학생총회

제 6조 (지위와 구성)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결 기구로서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7조 (권한)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토의, 의결한다.

제 8조 (의장) 의장은 전기공학과 학생회 회장이 맡는다. 전기공학과 학생회 회장의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.

제 9조 (소집)

1. 학생총회는 본회의 의장, 회원의 1/20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일주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해야 한다.
2. 학생총회의 소집은 3일 전 의장이 공고해야 한다. (단, 긴급을 요구하는 항은 예외로 한다.)
3. 소집 요건이 구비되었음에도 소집하지 않을 시에는 대의원총회 부의장이 소집, 집행한다.

제 10조 (의결)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3장 전기공학과 학생회 정, 부학생회장

제 11조 (지위)

1. 전기공학과 학생회장은 전기공학과를 대표하여 학생총회 의장이 된다.
2. 전기공학과 학생회 부회장은 전기공학과 학생회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이 궐위 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
제 12조 (신분보장) 전기공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은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공과대학 학생총회 또는 공과대학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

제 13조 (권한대행) 전기공학과 학생회 정, 부회장이 모두 궐위 때는 회원 중 호선하여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.

제 14조 (업무 및 권한)

1. 전기공학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한다.
2. 학생총회를 주관한다.
3. 전기공학과 학생회의 집행부장을 인선할 수 있다.

제 4장 집행위원회

제 15조 (지위) 본 회에 있어서 최고 집행기구로서 각 부서장으로 각 부서별 모임의 장이 된다.

제 16조 (구성) 전기공학과 학생회장이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각 국을 편성할 수 있다. 각 국은 국장 및 부장 및 국·부원을 둘 수 있다.

제 17조 (업무 및 권한)

1.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고유 사업을 진행한다.
2. 각 국장은 세로모임을 주관하고 학생총회의 의사 개진권을 가진다.
3. 국별 세로모임: 정기회의는 주 1회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 수 있고 연속 2회 출석하지 아니하는 단위에 대하여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.

제 5장 회칙 개정

제 18조 (발의) 본 회칙의 발의요건은 아래와 같다.

1. 본 회 회원 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
2. 학생총회에서 필요에 의한 발의

제 19조 (공고) 발의된 안건은 학생총회 회장이 본 회의 회원에게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 20조 (의결)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의 학생총회에서 출석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, 확정한다.

제 22조 (공포)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.

< 부칙 >

제 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과대학 학생회 회칙, 시행세칙 및 관례에 따른다.

제 2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관련 회의에서 확정하고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3조 본 회칙에 명시된 기구는 본 회칙의 규정을 받는다.

제 4조 본 회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.